

정부 및 유관기관

법령정보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-333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. 11. 10.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(안) 입안예고

1. 제 · 개정 취지

'09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, 신기술적용 제품의 사용 증가 및 소비자의 안전요구사항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 하였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62031(일반조명용 LED모듈-안전요구사항) 등 4종을 제정하고, K60598-1(등기구-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) 등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2031(일반조명용 LD모듈-안전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추가

나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347-2-13(램프구동장치-제2-13부-LED모듈용 DC/AC 전원 전자구동장치에 대한 개별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추가

다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2384(LED 모듈용 DC/AC 전원구동장치-성능요구사항)를 제정하여 추가

라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838-2-2(기타램프홀더-제2-2부 개별요구사항-LED 모듈용 커넥터)을 제정하여 추가

마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598-1(등기구-제1부 :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)을 개정하여 추가

바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968(안정기 내장형 램프-안전)을 개정하여 추가

사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969(안정기 내장형 램프-성능)을 개정하여 추가

3. 문 의

제·개정(안)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 소 :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전화번호 : 02-509-7242(FAX : 02-507-6657)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kats.go.kr>
- 이용방법 : 홈페이지 접속 → 기술표준원 소식 → 고시/공고

〈 제·개정 안전기준 리스트 〉

번호	기준번호	기준명	내용	대응국제규격	비고
1	K62031	일반조명용 LED모듈-안전요구 사항	LED모듈의 안전성평가	IEC 62031	제정
2	K61345-2-1-3	램프구동장치-제2-13부-LED 모듈용 DC/AC전원단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	LED구동장치 안전성평가	IEC 61347-2-13	제정
3	K62384	LED모듈용 DC/AC 전원구동장치-성능요구사항	LED구동장치의 성능평가	IEC 62384	제정
4	K60838-2-2	기타램프홀더-제2-2부 개별요구 사항-LED 모듈용 커넥터	LED구동장치와 모듈을연결하는 커넥터의 안전성평가	IEC 60838-2-2	제정
5	K60598-1	등기구-제1부-일반요구사항 및 시험	적용범위 확대 (LED램프 달린 등기구 포함)	IEC 60598-1Ed7.0	개정
6	K60968	안정기내장형램프-안전	적용범위 확대 (LED램프포함)	IEC 60968	개정
7	K60969	안정기내장형램프-성능	적용범위 확대 (LED램프포함)	IEC 60969	개정